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2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08. 23. 김향숙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8. 29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9. 10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김향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폭력 및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조례의 제명을 변경

- 현행: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
- 변경: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

2)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- 근거 법률을 추가하여 “불법촬영”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(안 제2조제5호)

3) 군수의 책무 및 계획 수립(안 제3조 및 제4조)

4) 신고체계의 마련, 실태조사 및 협조(안 제5조 ~ 제7조)

5) 교육 및 홍보(안 제8조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: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,「개인정보 보호법」,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40호

- 예고기간: 2024. 8. 23.(금) ~ 2024. 8. 28.(수)[5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1건(환경과)

조례안 내용	검토의견
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	○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2조(정의)2호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음으로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살펴 볼 때 ○ 다중이용시설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촬영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예방 및 성인지교육 부서에서 신설 조례 관리 요함.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정제)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폭력 및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제명) 조례의 적용범위를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- (안 제1조 ~ 제2조)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, 적용 대상시설 및 불법촬영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- (안 제3조 ~ 제5조) 군수의 책무, 계획의 수립,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- (안 제6조 ~ 제8조) 실태조사, 협조,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,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불법촬영 점검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의 협조,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○ **종합검토 의견**

- 본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폭력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(전부)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- 다만, 현행 조례의 개정으로 적용범위 대상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되고,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폭력 및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할 때,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관리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관련업무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　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